

의안번호	2201428
의 퇴 인	이인선 의원
회 답 일	2024. 7. 9.
추 계 번호	24B168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7 제1항 및 제2항 (교원인사위원회)	- 과학영재학교에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후단 신설) -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12조의11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신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봄(제2항)	재량규정
3	안 제12조의13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신설	-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음(제1항) -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함(제2항) -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 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의7제1항 및 제2항(교원인사위원회) 안 제12조의11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신설 안 제12조의13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등(안 제12조의7제1항·제2항, 안 제12조의11, 안 제12조의13)

- 개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설 건립을 위한 비용과 함께 교직원 인건비, 경상경비, 학사사업비 등 운영비가 수반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현재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과학영재학교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건축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¹⁾²⁾
- 이에 개정안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경우에도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동일하게 「영재교육 진흥법」 상 재정 지원 규정을 근거로 국가에서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³⁾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입학정원, 교직원 채용 인원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가 곤란하여,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 개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⁴⁾ 현 시점에서는 건립 부지, 필요한 시설의 규모, 건립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간주되므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재정 지원 규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동일하게 개정안에서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를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안 제12조의11제2항), 해당 법률에 따른 재정 지원 규정을 근거로 국가가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4) 안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또한,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⁵⁾ 채용 규모나 보수 단가 등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추계하기 곤란함
-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학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노후 정보시스템 재구축비, 노후 교육시설 보수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2024년도 기준 198억 7,200만원임⁶⁾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예산에 영재학교(충남, 대구경북, 울산)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5억원을 편성⁷⁾하였는데, 2024년 7월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연구용역이 진행 중임

Ⅲ. 부대의견

□ 없음

5) 안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6) 2024년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비고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R&D)(2231-417)	17,370	연구개발인건비 9,735 연구개발경상경비 1,541 연구개발활동비등 6,094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시설지원(R&D)(2231-435)	2,502	연구개발건축비 2,50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7) 과학기술원 영재학교 설립(R&D)(일반회계, 2231-436)

- 영재학교 설립타당성 용역비: 충남, 대구경북, 울산 등 3건 × 5억원 = 15억원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한국과학영재학교 기본 현황

○ 설립목적

-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 조기 발굴 및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체계적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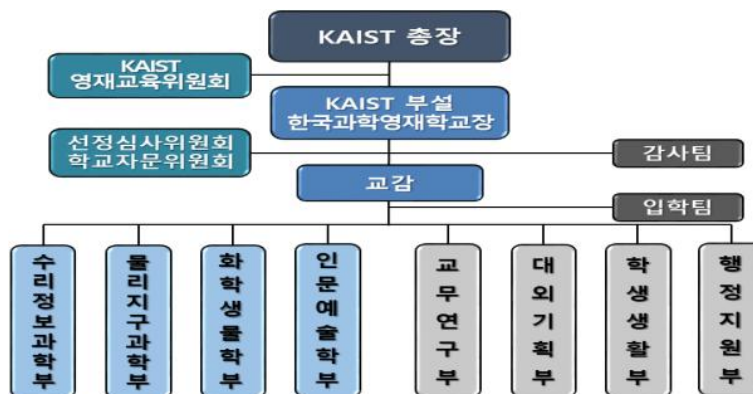
※ (설립근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 주요연혁

- 1990.09. : 부산과학고등학교 설립
- 2003.03. : 과학영재학교 전환(국내 최초)
- 2005.07. : 교명 변경(부산과학고 → 한국과학영재학교)
- 2009.02.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전환

○ 조직 및 인원

- 조직 현황



- 학생 현황

(2024.3월 기준 / 단위 :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생수	남	108	113	101	322
	여	27	33	31	91
	계	135	146	132	413

※ 외국인학생 31명 포함(1학년 10명, 2학년 13명, 3학년 8명)

- 교직원 현황

(2024.3월 기준 / 단위 : 명)

교원						직원				합계
교장	교감	전임교원	교육청교원	외국인/기간제	소계	행정/사무	기술/기능	조교	소계	
1	1	50	5	7	64	33	23	6	62	126

※ 외국인교원 : 7명 재직 중 / 수·과학 교과 전임교원 100% 박사학위 소지

○ 시설 및 예산

－ 시설 현황

(2024.3월 기준)

구 분	면 적	용 도	위 치
1. 부지	59,180㎡ (17,902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 교지	53,852㎡ (16,290평)		
나. 운동장	5,328㎡ (1,612평)		
2. 건물	36,636㎡ (11,082평)		
가. 본관동	15,461㎡ (4,677평)	교육시설	
나. 창조관	5,460㎡ (1,652평)	교육시설	
다. 예지관	4,304㎡ (1,302평)	교육시설	
라. 기숙사	8,859㎡ (2,680평)	학생기숙사	
마. 백양관	1,284㎡ (388평)	게스트하우스	
바. 드림디자인센터	985㎡ (298평)	교육시설	
사. 기타부속물	283㎡ (85평)	수위실, 창고 등	

－ 예산 현황

(2024년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1. 정부출연금	19,872	1. 인건비	9,742
2. 자체수입	1,803	2. 경상운영비	1,556
		3. 학사사업비	7,875
		4. 시설비	2,502
합 계	21,675	합 계	21,675

○ 교육과정 운영 및 특징

구 분	내 용		
선도적 과학영재교육과정 개발·운영	- 국내 고교 최초 혁신적 무학년 졸업학점제 도입·운영 - 박사급 전임교원, 외국인교원 등 혁신적 교원 임용제도 운영 ※ 제6차 교육과정 편제		
	구 분	이수 요건	세부사항
	교과	127 학점	자연교과 67학점(56%) / 인문교과 52학점(44%)
			필수교과 66학점(55%) / 선택교과 53학점(45%)
	창의연구 활동	28 학점	창의기초연구 6학점, R&E 16학점, 졸업연구 6학점
	리더십활동	270 시간	자기계발활동, 협업활동, 세계시민활동 각 60시간 이상 (총 270시간 이상)
학년별·단계별 학생 교육연계 창의연구활동 운영	창의설계활동 1학년 1학기 ⇒ 연구방법 기초세미나 1학년 2학기 ⇒ R&E 2학년 ⇒ 졸업연구 3학년		
	- 창의설계활동(1학년 1학기): 학생들의 연구 관심분야 탐색과 연구주제 구상 및 탐구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 설계활동 지도 - 연구방법기초세미나(1학년 2학기):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선행 연구 및 조사와 탐구활동을 통해 R&E 연구제안서 완성 - R&E(2학년): 연구(Research)와 교육(Education)을 병행한 대표적 실험실습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사 관심분야 학생 3~4명이 한 팀을 이루어 대학교수, 교내 교원 등의 지도를 받으며 소그룹 자율연구 수행 - 졸업연구(3학년): 창의기초연구 및 R&E를 통해 배양된 연구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관심분야에 대한 심층적 개별 연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졸업논문 완성 (KAIST HRP : KAIST 교수 지도 / 개별연구 : 교내 교원 지도로 구분)		

구 분	내 용	
KAIST 연계의 전주기적 과학영재교육 확립	학교 운영 및 정책	학생 교육 및 지도 활동
	◦ KAIST 영재교육위원회 – KSA 운영관련 중요사항 심의 기구 ◦ 교육과정 개정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분석 및 개 편 ◦ 학교 평가 – KAIST를 통한 학교평가 실시(매년 1회) ◦ KSA 미래 비전 수립 – KSA Vision 2040 수립 협업 ◦ KSA 교원 임면 – KAIST 총장 권한의 KSA 교원 임 용 및 재임용 ◦ KAIST 겸직교수 임용('23년 현재 4명 임용) – KSA 교원의 KAIST 겸직교수 자 격 부여를 통해 전문분야 연구활동 참여기회 제공 ◦ 교원 전문 연수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을 통 해 교원의 주기적 전문연수 매년 실시	◦ HP(Honors' Program) – 3학년 일부('23년 15명) KAIST에 서 생활하며 대학과목 수강(KAIST 학점으로 인정) – '22학년도부터 2개 학기로 확대 운 영 ◦ 학생 연구활동 지도 – KAIST 교수의 2학년 소그룹자율 연구(R&E) 및 3학년 졸업연구 (HRP) 지도 참여 – '23년 기준 R&E 22과제, HRP 14 과제 KAIST 교수 지도 ◦ KAIST 교수 직강 및 세미나 – 교수 직강: 매 학기 1~3과목 개설 – 세미나: 학부별 수시 초청 특강, 세 미나, 워크숍 개최 ◦ AP(Advanced Placement) – 대학과목 선이수 및 학점 인정(최 대 58학점) ◦ 학생 진로 체험 활동 – KAIST Lab 탐방(Zoom in Bio, Chem Openlab 등), KSA 과학축 전 연계 연구실 견학 활동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자료 2] 영재학교, 과학고 현황

구 분	영재학교	과학고
관계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지정권한	교육부장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	시·도교육감 (교육부장관 동의)
모집단위	전국 단위	광역 단위
입학자격	중학교 재학생·졸업생(중1부터 가능)	중학교 졸업생(중3만 지원가능)
입학전형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영재성 검사 3단계 캠프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
졸업방식	대다수 3학년 만기 졸업	2학년 조기졸업 가능
교육과정운영	학칙을 통한 자율적 운영	국가 교육과정 준수(교육부 고시)

Ⅰ 영재고, 과학고 현황 Ⅰ

- 영재고(총 8개) : 경기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 과학고(총 20개) : 강원과학고등학교, 경기북과학고등학교, 경남과학고등학교, 경북과학고등학교, 경산과학고등학교, 대구일과학고등학교,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부산과학고등학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울산과학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전남과학고등학교, 전북과학고등학교, 제주과학고등학교, 창원과학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북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